

## 변리사스쿨 1월 전국모의고사 정오표

과목	번호	구분	정정 전	정정 후
산업재산권법	4	정답	④	②, ④
	26	정답	③	③, ④

### 〈산업재산권법 이의신청 내용〉

[4번] Q. 보기 수정.

② 당사자가 부정기간의 장애로 특허청에 계속 중인 절차를 속행할 수 없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특허청장의 결정에 의하여 절차가 중지된다.

답변) ②, ④ 복수정답.

[26번] Q.

의정서 8조에 따르면 본국관청은 수수료를 재량으로 정할 수 있는데 문제에서는 ‘재량으로 정할 수 없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문제에서 옳지 않은 것을 묻고 있으므로 4번 지문 또한 정답이 되어야할 것 같습니다.

답변) ③, ④ 복수정답.

[29번] Q.

해설에 따라 상표법 제42조 제5항을 참고하면 본문에서는 제41조 보정에 대한 각하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고 되어있지만 단서에서는 '제116조에 따른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있어서 거불심(116조) 청구시에는 불복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제41조 보정에 대한 각하결정 역시 불복 가능하기에, 2번지문은 옳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

보정각하결정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불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42조 5항 단서에서는 예외적으로 116조의 심판 청구하는 경우에는 불복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출원공고결정 후의 보정에 대하여는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하여 그 당부를 다투는 경우 외에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

2 번 지문에서 요지변경에 대한 보정각하를 받은 경우 ”어느 경우에도 불복할 수 있다“는 것은 위 42조 5항의 규정의 해석상 틀린 지문입니다.

[34번] Q.

④ 시행규칙 별표5에서 정하는 한 벌 물품의 구분에 속하지 않더라도 93을 보면 ‘그 밖에 한 벌 물품으로 동시에 사용되는 것으로 인정’ 한다고 되어있어 문의드립니다.

답변)

시행규칙 별표5의 93의 내용은 그 밖에 “동시사용이 인정”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통일성이 인정되더라도 동시사용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별표5의 93의 내용을 만족하지 않으므로 한 벌 물품의 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바, 틀린 지문입니다.

<자연과학개론 이의신청 내용>

[30번] Q.

5번 선지의 해설대로  $\text{Na}^+$ 와 물 배출이 증가하게 되면 혈압이 떨어집니다. 즉 5번 선지는 옳은 내용이지만 문제에서 조건으로 제시한 '저혈압 상황'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므로 5번도 틀린 지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

저혈압 상황이지만, 선지에세 "ACE 작용이 억제되면"이라는 조건을 주었기 때문에, 안지오텐신I이 안지오텐신II로 전환되지 못하고 그로 인해 알도스테론이 합성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text{Na}^+$ 배출이 저혈압 상황에서도 상대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2번이 확실하고, 5번은 정답이 되지 않습니다. 5번 선지 표현은 2018년에 약대 준비 시험(PEET)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정답은 2번 하나입니다.